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2025. 10.

□ 처분요구일람표

1. 임대관리비 등 미납 처리 부적정 (시정)	1
2. 선금 관련 업무 부적정 (주의)	4
3. 연구장비 매각금액 세입처리 부적정 (주의)	6
4. 인사규정 등 규정 개정 소홀 (통보)	8
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12
6.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15
7. 하자검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18
8.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직원 채용공고 부적정 (주의)	21
9. 소규모 건설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26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0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임대관리비 등 미납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임대관리비 및 검사수수료 및 등의 징수 및 미납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

「입주업체보육사업운영지침」 제14조의 2(부담금의 미납에 따른 조치) 및 「공동활용장비및연구시설운영관리지침」 제17조의 2(사용료의 미납에 따른 조치)에 의하면 입주업체의 임대료·관리비 등이 1개월 미납될 경우 관리부서는 해당 업체에 미납사실을 납입 계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고와 독촉과의 기간을 1개월로 하며, 계고는 원장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같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고 후에도 계고사항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부서는 입금기한을 명시하여 독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촉과 지급명령과의 기간을 2개월로 하고 2회에 한하며, 독촉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같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촉 후에도 독촉사항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부서는 지원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지원부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촉과 지급명령과의 기간을 2개월로 하고,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등을 하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를 청구하여 결손처리의 절차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명령 후에도 계고사항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부서는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며, 다만 재산명시·조회 결과 채무액을 변제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징수를 위해 투입되는 경비가 미수금보다 많거나 법인에 실익이 미미할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입주업체의 임대관리비, 검사수수료 등이 미납되었을 때에는 계고 및 독촉을 원장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하여야 하고, 독촉사항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표] 임대관리비 등 미납내역과 같이 미납 28건 54,486,427천 원이 발생하였으나 해당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계고 및 독촉을 하지 않고 유선전화 및 문자로 처리하였으며, 법원에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임대관리비 등 미납내역

(단위 : 원)

연번	채권명	거래처명	채권 발생일	미납금액	비 고
	28건			54,486,427	
1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4.12.12.	27,500	
2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2.12.19.	594,000	
3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0.09.01.	96,800	
4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0.09.21.	198,000	
5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5.07.01.	211,200	
6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0.11.06.	281,600	
7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2.03.30.	312,400	
8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2.04.28.	427,680	
9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3.06.09.	497,600	
10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4.08.26.	434,500	

연번	채권명	거래처명	채권 발생일	미납금액	비 고
11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5.07.02.	500,500	
12	장비수입 미수금	◇◇◇◇	2023.06.26.	676,000	
13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4.07.03.	1,909,600	
14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5.04.15.	4,250,070	
15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3.12.26.	100,000	
16	검사수수료 미수금	◇◇◇◇	2025.01.07.	198,000	
17	기타미수금	◇◇◇◇	2021.05.03.	250,000	
18	기타미수금	◇◇◇◇	2022.07.08.	250,000	
19	기타미수금	◇◇◇◇	2023.12.31.	12,283,200	
20	임대관리비 미수금	◇◇◇◇	2024.01.31.	11,389,780	지급명령 (2024.05.09.)
21	임대관리비 미수금	◇◇◇◇	2022.05.31.	110,000	
22	임대관리비 미수금	◇◇◇◇	2020.11.30.	1,000	
23	임대관리비 미수금	◇◇◇◇	2024.12.27.	107,560	
24	임대관리비 미수금	◇◇◇◇	2023.04.28.	3,182,097	지급명령 (2024.05.09.)
25	임대관리비 미수금	◇◇◇◇	2025.04.24.	12,463,340	독촉 공문 (2025.02.18.)
26	장비수입 미수금	◇◇◇◇	2020.11.03.	1,830,000	
27	장비수입 미수금	◇◇◇◇	2025.06.12.	504,000	
28	장비수입 미수금	◇◇◇◇	2024.02.20.	1,400,000	

※ 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미납 건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여 계고 및 독촉을 실시하고, 독촉사항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압류 신청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 관련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 사무의 처리)에 의하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채권 확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선금 지급 시 계약업체에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아래 [표] 선금 지급내역과 같이 선금 지급 시 1건의 선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을 계약 종료일로 하거나 종료일 보다 1개월 연장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받아 선금에 대한 채권 확보에 미흡하였다.

[표] 선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약 명	계 약 일 자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계 약 체 명	선 금 지급액	선 금 지급 일	선금 증권 등 유 무	선 금 보증·보험 기간
□ □ □ □ 용 역	'23.08.07.	175	'23.08.07.~ '23.10.31.	◇◇◇◇	72	'23.09.01.	무	
△ △ △ △ 용 역	'24.02.14.	40	'24.02.14.~ '24.12.31.	◇◇◇◇	20	'24.09.03.	유	'24.08.29.~ '24.12.31.
☆ ☆ ☆ ☆ 용 역	'24.05.03.	475	'24.05.03.~ '24.12.31.	◇◇◇◇	238	'24.07.17.	유	'24.07.03.~ '25.01.30.
♣ ♣ ♣ ♣ 용 역	'24.10.14.	19	'24.10.14.~ '24.12.31.	◇◇◇◇	10	'24.10.24.	유	'24.10.21.~ '24.12.31.
◎ ◎ ◎ ◎ 용 역	'25.06.04.	442	'25.06.04.~ '25.10.31.	◇◇◇◇	221	'25.07.03.	유	'25.06.18.~ '25.11.30.

※ 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선금 지급 시 선금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장비 매각금액 세입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연구장비 등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Ⅱ. 예산편성의 원칙 5.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 「회계규정」 제55조(수익 및 비용의 계상원칙)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고, 그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계하거나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연구장비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매각금액 전액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표] 연구장비 매각에 대한 세입처리 내역과 같이 2025.02.13. □□□□거래소를 통해 수분활성도 측정기 등 8대의 연구장비를 공개

경매로 매각하였으나 매각금액 전액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출품수수료 및 낙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세입으로 처리하였다.

[표] 연구장비 매각에 대한 세입처리 내역

(단위 : 원)

품 명	매각금액	출품수수료	낙찰수수료	세입금액	비고
△△△△ 등 8대	1,800,000	220,000	19,800	1,560,200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장비 매각 등의 수입 발생 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세입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인사규정」 등 규정 개정 소홀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인사규정」 등의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에 관한 사항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윤리경영 2.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에 의하면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 「인사규정」 제41조에 의하면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고, 다만 총액이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1]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기준보다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표1] 징계(강등, 감봉)의 효력기준

징계종류	지방공무원법		연구원 인사규정		비고
	직무제한	보수	직무제한	보수	
강등	3개월간	전액 감	3개월간	보수의 6할 감	
감봉	-	3분의 1 감	-	10분의 1 감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도록 해당 규정 등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연구원 「징계규칙」은 [표2]와 같이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 12개 유형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표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유 형 별	지방공무원 징 계 규 칙	연 구 원 징계규칙	비 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감봉~견책	불일치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해임~정직	불일치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파면~해임	일 치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유 형 별	지방공무원 징 계 규 칙	연 구 원 징 계 규 칙	비 고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해임~정직	불일치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1)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2) 중상해 나. 사망사고의 경우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해임~정직 파면~해임 해임~정직 파면~해임	정직~강등 해임~정직 해임~강등 파면~정직 파면~정직	불일치 일 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파면~해임	일 치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강등~정직	불일치

2.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직원 일부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 「복무규정」 27조(공가)에는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직원 복무 처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회계규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 사무의 처리)에 의하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 「회계규정」 제60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6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개정하고, 「복무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공가 항목을 신설하며, 「회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V.예산 집행기준, ②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예산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1. 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 6호 아목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지급을 명시¹⁾하고 있다.

한편, 같은 지침 나. 세부 집행 요령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각종 일반수용비, 임차료, 강사료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유인물, 명패 등의 제작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부서 업무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각종 비품, 직원 명패 및 유인물 제작 등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행사에 참여한 □□□□□□ 교육생들의 식사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2022. 7월부터 2025.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서업무비로 소속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절선물 구입, 행사운영비로 각종 비품, 유인물 등 제작, 행사참여자에게 식사 제공 등 총 34건, 41,124,200원에 대해 예산비목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Q&A에 따르면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지급’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답변

[붙임]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수당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구원 수당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22~2023년 가족수당의 지급액²⁾은 자녀의 경우 월 2만 원(2024. 3. 25. 규정 개전 이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자녀의

2) 부양가족 가족수당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2024년 3월까지	2024년 4월 ~ 2025년 3월	2025년 4월부터
배우자	40,000	40,000	40,000
첫째자녀	20,000	30,000	50,000
둘째자녀	20,000	70,000	80,000
셋째이상	20,000	110,000	120,000
그 외	20,000	20,000	20,000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수당규정 제7조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7조제7항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 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2022~2023년에 가족수당을 신청한 직원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나이가 만20세가 되는 해의 태어난 월까지만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2022~2023년에 직원 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되는 해의 태어난 월 이후에도 아래 [표1]과 같이 5명에게 700천 원의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가족수당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 명	대상자녀 생 년 월	지급기한	실제 지급기간	과다 지급 기간	과 다 지급액
계	5명					700,000
1	△△△	2002.01.	2022. 1월	2022년 전체	2022.2.~12월(11개월)	220,000
2	△△△	2003.10.	2023. 10월	2023년 전체	2023.11.~12월(2개월)	40,000
3	△△△	2003.03.	2023. 3월	2023년 전체	2023.4.~12월(9개월)	180,000
4	△△△	2003.09.	2023. 9월	2023년 전체	2023.10.~12월(3개월)	60,000
5	△△△	2003.02.	2023. 2월	2023년 전체	2023.3.~12월(10개월)	200,000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5년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아래 [표2]와 같이 총 2건, 120천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가족수당 과소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 명	미지급년월	정상지급액	실제지급액	과소 지급액	비 고
계	2명		180,000	60,000	120,000	
1	△△△	2025.05.	40,000	0	40,000	
2	△△△	2025.06.	140,000	60,000	80,000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700천원은 회수, 과소 지급된 120천원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업무처리 소홀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경상북도 생물 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³⁾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3)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와 만료일 전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 완료 시에는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도중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를 실시하는 등 준공 후 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2022. 7월부터 2025.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과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일 전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하자검사 미이행으로 하자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졌고,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한 보수를 위해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용역·물품계약 하자검사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직원 채용공고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 및 「계약직원 채용 규칙」 제5조 등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라 가점하도록 되어 있고,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⁴⁾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국가보훈처, 2022. 6.)」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차별을 두거나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제한하면 안되고,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우대사항을 명시하되,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의 내용 또한 함께 명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 가점부여로 인한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공고문을 작성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원은 2022. 8월부터 2025. 8월 감사기간 현재까지 21차례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래 [표1]와 같이 공통응시자격 성별 부분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면제자,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부적정하게 제한을 두었고,

[표1] 채용공고 내 공통응시자격 부분

4. 응 시 자 격
가. 공통응시자격 (기준일: 공고일)
1)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응시연령: 제한없음(단, 본 연구원 정년(만61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4) 성 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사람)
5) 지 역: 제한없음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채용 공고문 내용 일부 발췌

4)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인원(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2]-나)

또한, 모집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⁵⁾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총 21차례 아래 [표2] 및 [붙임]과 같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우대사항만을 명시하였다.

[표2] 채용공고 내 가산점 적용 부분

7. 가산점 적용			
가. 공통적용 및 채용분야 가산점 (공고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구분	가산비율	세부내용	
공통 사항	장애인	5%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3~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대 사항	경력 사항	1~3%	백신상용화기술 연구직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운영 총괄 유경력자(1~3%) 지원 센터 운영 수석급 · 수의사 자격증 취득자(3%)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본인 사전 확인 바람

나.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면접전형에만 가산점 적용
- 2) 공고일까지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인정합니다.
- 3) 공통사항에 중복 해당 될 시에는 최고 가산점수 사항 1개만 가산됩니다.
- 4) 우대사항에 중복 해당 될 시에는 최고 가산점수 사항 1개만 가산됩니다.
- 5) 공통사항과 우대사항에 모두 해당될 시에는 중복 적용합니다.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채용 공고문 내용 일부 발췌

그 결과 병역미필자는 채용시험을 지원조차 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가 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 법령에 맞지 않는 가점을 부여받게⁶⁾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단,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가능(법 제31조제3항)

6) 2022.7. ~ 현재 감사기간 치뤄진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음.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채용공고 내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규모 건설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설치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계	도급	관급		
□□□ □□□□ □□□□ 설치공사 (○○○○○)	배관 바닥 및 벽체마감	53,857	53,857	-	23. 7. 28. ~ 23. 9. 5. (1개월 이상)	◎◎◎◎
◇◇◇◇◇◇◇◇ ◇◇◇◇◇◇◇◇ 및 ◇◇◇◇, ◇◇◇◇ ◇◇◇◇ 보완공사 (△△△△△)	내부 인테리어	54,879	54,879	-	23. 8. 3. ~ 23. 9. 1.	◇◇◇◇

1. 사회보험료 설계 미반영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건설공사에,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보험료를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 □□□□ □□□□ 설치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 작성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미반영하였고, “□□□ □□□□ □□□□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미반영 하는 등 공사 원가계산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의 고용 안전과 산업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미반영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⁷⁾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 천 원)

구 분 공사종류	대 상 액*				비 고
	5억 미만	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요율	기초액		
일반공사(갑)	2.93%	1.86%	5,349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	2.10%	
중건설공사	3.43%	2.35%	5,400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	1.66%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	1.27%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 □□□□ □□□□ 설치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공사 원가계산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 (재 + 직노) × 율 + 기초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과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에 작은 금액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은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아래 [표 1]과 같이 “△△(◇◇)산업 활성화 및 후속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 신규사업 기획 연구용역” 등 10건의 용역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계약명	계 약 금 액	계약업체	평가위원 구성	평가결과 공개	
					평가점수	위원명단
1	△△(◇◇)산업 활성화 및 후속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 신규사업 기획 연구용역 (□□□□□)	98	○○○○○	7인 (내부3 ⁸ , 외부4)	미공개	미공개
2	▲▲▲▲▲▲▲▲센터 ♣♣♣ 세부분안 마련 연구용역 (△△△△△)	69	○○○○○	8인	미공개	미공개
3	국내 ♣♣♣♣ 산업 활성화 및 ☆☆☆ 기반조성을 위한 산업용 ▽▽ 규제개선 연구용역(□□□□□)	72	○○○○○	7인 (내부3, 외부4)	미공개	미공개
4	2023 ♥♥♥♥♥♥포럼 행사대행용역 (△△△△△)	174	○○○○○	7인 (내부3, 외부4)	미공개	미공개
5	2024 경북 ♣♣♣♣산업 ♠♠♠ 행사대행 용역 (○○○○○)	475	○○○○○	7인	미공개	미공개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평가위원 구성	평가결과 공개	
					평가점수	위원명단
6	제○○회 ◆◆◆◆◆ 행사대행 용역 (○○○○○)	326	○○○○○	7인	미공개	미공개
7	경상북도 ▲▲▲▲▲ ■■■■■ 시스템 및 이력관리 운영, 유지보수 용역 (□□□□□)	399	○○○○○	7인	미공개	미공개
8	2025 ◇◇◇◇◇ 행사대행용역 (△△△△△)	226	○○○○○	10인	미공개	미공개
9	2025 경북 ▽▽▽▽▽ ☆☆☆ 행사대행 용역 (○○○○○)	442	○○○○○	7인	미공개	미공개
10	◇◇◇ ♣♣♣ ○○○○ 체계수립을 위한 ○○○ 구축 개념설계 용역 (□□□□□)	147	○○○○○	7인 (내부3, 외부4)	미공개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제4절 1(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5장 제4절 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⁹⁾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 시 3배수 이상의

8) 내부 : 발주부서 지정 평가위원, 외부 : 추첨에 따른 선정된 평가위원

9)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산업 활성화 및 후속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 신규사업 기획 연구용역” 등 10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평가위원 예비명부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 [표 1]과 같이 1, 3, 4, 10번 용역의 경우에는 전체 평가위원 중 3명의 위원을 해당업무와 관련된 연구원 단장(해당 사업 총괄 책임자), 경상북도 및 ○○시 직원(팀장)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전체 용역에 대하여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